

야 하겠습니까?

이 案件은 반드시 否決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本議員의 反對發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다음은 贊成討論을 申請하신 議員님이 계십니다. 李文光議員님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文光議員 本議員이 審査報告 案件을 發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贊成討論이 아니고 補充發言을 하러 나왔습니다.

議案番號 1272番, 都市計劃施設 公園, 學校 決定 및 變更決定의 件으로, 金湖洞 管內에 中學校가 없어서 舞鶴女中으로 원거리 通學 및 一部 學生들이 中部教育廳 管內로 配置되고, 舞鶴女高와 同一 區內에 所在로 授業時間에 시간차가 있고 또 教育上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장을 舞鶴女高와 동시에 使用하기 때문에 授業에 支障이 있다 해서 鷹峰第2近隣公園 일부를 變更하여 舞鶴女中을 移轉해서 學校로 決定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代替 公園用地로 용곡國民學校와 中學校 施設 後 開設 殘餘地 일부를 龍馬自然公園으로 變更決定코자 하는 것으로 東部教育廳의 要求로 城東區에서 立案해서 서울市長이 提出한 案件임을 추가해서 補充發言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洪濤林議員님 나오셔서 反對討論이 있으시면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濤林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鷹峰第2近隣公園은 바로 本議員이 직접 살고 있는 옆입니다. 물론 저희 城東區에 學校施設을 하자는 데 저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城東區가 分區가 되어서 20個 洞입니다. 그런데 20個 洞中에는 人文系 男子高等學校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女子·中·高等學校는 漢陽女高도 있고 舞鶴女中·高가 있습니다. 지금 立案해 올라

온 것은 女子中學校와 男子高等學校를 분리하겠다, 즉 운동장을 같이 쓰려니까 불편하다는 案입니다.

그러나 서울市內는 中·高等學校가 겹쳐있는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은 否決을 해 주시면 이 다음에 男子人文系 高等學校가 城東區에는 전혀 없고, 또한 學校를 施設할 만한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件은 꼭 否決해 주시고, 이 다음에 教育廳에서 올라올 때 高等學校로 變更해서 올라오게 그때 可決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執行部 都市計劃局長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執行部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案은 오늘 否決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白昌鉉 효율적인 會議 進行을 위하여 一括上程된 案件 中 議案番號 1272番을 除外한 나머지 7件을 먼저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一括上程된 議事日程 第20項 都市計劃案에 대한 議會 意見聽取 8件 中 議案番號 1272番을 제외한 나머지 7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각각 採擇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議案番號 1235番, 1236番, 1238番, 1260番, 1261番, 1262番, 1263番, 이상 7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총 제출 및 회부 상정건수: 9건

· 전회기 보류 : 1건			· 금회기(신규) : 8건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심사내역
1224	'95. 2. 3	'95. 2. 7	· 제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95. 2. 22) 상정, 심사(보류)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심사(보류)
1235	'95. 2. 14	'95. 2. 16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36	'95. 2. 14	'95. 2. 16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38	'95. 2. 14	'95. 2. 16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60	'95. 3. 28	'95. 3. 29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61	'95. 3. 28	'95. 3. 29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62	'95. 3. 28	'95. 3. 29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63	'95. 3. 28	'95. 3. 29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1272	'95. 3. 31	'95. 4. 3	·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 상정, 의결

  

<p>2. 상정일자</p> <p>○도시계획국 제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95. 4. 12)상정, 의결</p> <p>3. 제안이유 및 요지</p> <p>○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최재범(도시계획국 소관 9건)</p> <p>가. 제안이유 별첨내용</p> <p>나. 주요요지 안전별내용 별첨</p> <p>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p> <p>○안전별내용 별첨</p> <p>5. 심사결과</p> <p>○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민생활과 밀접한</p>	<p>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p> <p>○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8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 처리토록 하였고,</p> <p>○1건에 대하여는 동건과 관련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음.</p> <p>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 청취의견 안전별심사결과</p> <p>○총9건중</p>
--	---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 8건(1235, 1236, 1238, 1260, 1261, 1262, 1263, 1272)
- 보류 : 1건(1224)

시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8건)

의안 번호	1235
----------	------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464-10앞
  - 면적 : 280㎡→766㎡(규모변경)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안은 '90. 10. 13. 시설결정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지하철 5호선(방화동~고덕동)중 동대문구 장안동 464-10 앞 지역의 지하철 환기구에 대하여 그 지점에 환기구를 설치할 시 시설이 통행로상에 돌출하여 장차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 이 환기구를 같은 지역에 인접한 교통섬 내로 연장하여 시설하기 위하여 기정 도시철도(환기구) 면적 280㎡를 766㎡로 확장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지하철건설과 함께 지상 보도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의 변경 결정안에 동의 의견임.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1236
----------	------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 내용
    - 면적 : 407,529㎡→420,259㎡(증 12,730㎡)
  - 도시계획사항 : 공원(보라매근린공원 결정 : '86.6.16)
  -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은 동작구 신대방동 470-1 일대 약 32,881평의 공군대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이 부지 사용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를 결정하고,
  - 그중 토지의 지형으로 보아 경사도가 심하고 임상이 양호한 12,730㎡를 인접 보라매공원에 편입되도록 추가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시민의 휴게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시설변경 결정안에는 동의 의견임.
  - 단, 추가로 결정할 공원배치 계획도면을 보면 공원이 공공용지 중간으로 도로형태를 이루고 있어, 공원으로서는 기능이 원활치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배치상 재검토가 요구됨.
  - ※ 공공용지는 같은 지역으로 통합하고 공원용지도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존 공원에 완만하게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1238
----------	------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내용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공 원 (어린이공원)	서초구 잠원동 70-6	1,100	공원 신설결정 -5개소 5,335.8㎡
"	"	서초구 잠원동 70-7	1,600	
"	"	서초구 잠원동 70-8	1,100	
"	"	서초구 잠원동 66-11	767.7	
"	"	서초구 잠원동 66-12	768.1	
기정	공원 (서초12어린이공원)	서초구 반포동 30-5 일대	5,506.9	공원 추가결정 (402.9㎡)
변경	"	"	5,909.8	

○도시계획사항: 잠원동 70-6: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지구  
잠원동 70-7 외 4필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4. 검토의견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은 서초구 잠원동 70-6 외 4개 필지 총 5개소의 5,335.8㎡에 신규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 서초구 반포동 30-5일대에 있는 기정 서초12 어린이공원에 402.9㎡를 추가하여 현 공원면적 5,506.9㎡를 5,909.8㎡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하는 5개 공원은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68년에 시행한 이 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85.12 환지 처분하였으나, 사무 착오로 도시계획상(공원) 시설이 결정되지 않아 사후에 이를 결정코자 한 것이며,

○서초12 어린이공원 변경도 당초 공원으로 시설결정시 환지 확정에 따라 공원으로 편입되었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누락되어 금번에 시설정비차원에서 사후 공원을

을 추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당초 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계획대로 각각 공원으로 결정되도록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의안 번호	1260
----------	------

1 건 명: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안) 승인신청

2. 제안이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안) 승인신청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기준 및 목표년도  
-기준년도: 1991년  
-목표년도: 2011년

○내용

- 도시기본계획의 전체 구상
- 서울 대도시권 계획 구상
- 21세기 서울의 발전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간 구조개편 구상</li> <li>- 서울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개발부문, 도시경관부문, 공원녹지 부문, 산업경제부문, 도시환경부문, 도시교통부문, 정보통신부문, 방재계획부문, 주택계획부문, 실현방안부문, 토지이용부문</li> </ul> </li> <li>○ 상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도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활용코자 함.</li> </ul> </li> <li>3.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1990년 5월에 확정된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의 최초 법정계획에 대하여</li> <li>○ 그간 정부시책과 세계화의 계획에 따라 공간 구조개편이 요구되고, 서울시 주변 도시와 경쟁 기반 체제유지를 위한 도시광역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치화시대에 맞추어 자치구 기본계획의 수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li> <li>○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시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임.</li> <li>○ 도시계획의 수정 및 보완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의 기준년도를 1981년에서 1991년으로 변경하고, 목표년도도 2001년에서 2011년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임.</li> <li>○ 도시계획의 목표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의 목표상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기의 골격을 갖춘 개방된 국제도시</li> <li>- 정보·지식산업의 비중이 증대된 도시</li> <li>- 주거·문화·휴식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도시</li> <li>- 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로 되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성숙된 도시환경, 풍요로운 삶의 터, 자랑스러운 서울을 기본 목표로 하여,</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생활이 우선하는 도시-시민화</li> <li>- 지역의 특성과 역할을 중시하는 도시-지역특성화</li> <li>-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경 친화적 도시-지속화</li> <li>- 서울 대도시권 공생기반 조성-대도시권화</li> <li>- 21세기를 주도할 서울의 세계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음.</li> </ul> </li> <li>○ 본 도시계획 수정안의 기본 골격은 장래 교통대책과 공간 구조개편을 주로 하고 주택계획과 정보통신 및 산업경제계획과 그리고 경관녹지계획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li> <li>○ 첫째, 교통대책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철도망 건설계획으로 서울시내 지하철이 닿지않은 지역에 2011년까지 경전철 100km와 서울의 부도심과 연계하여 수도권지역에 간선전철 150km를 계획하여, 간선전철은 경인간 동서를 기준으로 3개 노선을 축으로 건설할 계획임.</li> <li>-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연장계획에서 도시 고속도로는 2011년까지 255km를 추가하여 총 600km로 계획하고, 간선도로는 250km를 추가하여 총 800km를 계획하고 있음.</li> </ul> </li> <li>○ 둘째, 공간구조 개편계획은 현재의 도시계획체계 1도심, 5부도심, 58지구 중심제를 시 전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여 4개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기정 도시계획체계를 1도심, 6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지역중심을 신설하고 중심지역수를 조정하였음.</li> <li>○ 셋째, 주택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주택보급율을 85%로 계획하고,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민의 소득대비 주거비율 25%선을 기준으로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최저주거기준제를 계획하고 있음.</li> <li>○ 넷째, 정보통신 산업경제계획에서는 고속</li> </ul>
--	--

<p>정보통신망과 지역통신망을 연계하여 행정 서비스 강화와 함께 고도의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화산업 지원센터를 계획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p> <p>○ 다섯째, 경관녹지계획에서는 한강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 강변폭원 500~1000m 간에 “리버 벨트”를 설정하여 건축을 규제하도록 하면서, 남산 경관관리를 위하여 주변 3개지역을 특별경관 관리구역으로 하고, 구릉지 등 경관관리를 위해서도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p> <p>○ 각 부문별 도시계획을 검토하면, 현재의 서울시가 수도권 인접도시와 연계되어 광역 도시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광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철도망을 연장하고 도시 고속도로와 간선 도로를 주변도시와 관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은 장래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응하는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며, 현재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계획을 격자형으로 조정하는 것도 획기적인 교통대책으로 사료됨.</p> <p>○ 계획된 교통대책과 저소득시민의 주택지원 등에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거의 시의 재정능력이 없어 그 사업이 수십년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도시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계획안에 맞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적극 수립되어야 할 것임.</p> <p>○ “리버 벨트” 설정과 남산경관 보호를 위하여 특별경관구역을 지정할 시,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한강변에는 이미 고층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만 고도제한 등 규제를 가한다면 한강변의 전체적인 경관관리상 지역별로 부</p>	<p>조화를 이루게 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요청됨.</p> <p>5. 심사결과 시 승인신청(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0;">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center;">1261</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위치 : 강남구 도곡동 190, 153일대 ○ 내용 · 면적 : 249,980㎡→249,987㎡(증 7㎡) ○ 도시계획사항 · 도곡동 190-3 임야(양수홍) : 일반주거 지역, 공원일부 저축 · 도곡동 153-6 임야(양수홍) : 일반주거 지역 4.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은 강남구 도곡동 190-3의 공원 경계선에 대하여 '90. 12.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사업무착으로 공원 경계선이 지적 고시선과 일치되지 않게 지적 분할되어 강남구 고시 제1993-29호('93. 7. 23)로 정정 고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대체용지인 강남구 도곡동 153-6을 공원으로 대체 결정하고, 강남구 도곡동 190-3은 공원에서 해제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위치변경) 결정내용임. ○ 강남구 도곡동 190-3(124㎡)의 토지는 토지주의 토지 일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는 관계로 토지 전체에 대한 건축 등이 곤란한 세장형으로 되어 있어, 지적승인 고시 도면정정시 공원용지에 포함된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하고, 대신 공원의외부에 있는 도곡동 153-6 임야(131㎡)를 같은 공원에 편입토록 하여 공원용지 일부를 대체 지정하면서 기존 도곡근린공원 면적</p>	의안 번호	1261
의안 번호	1261		

<p>일부(7㎡)를 확장하고자 한 것으로 시 변경결정안에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20%;">의안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262</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양천구 목동 산 7-1 일대 ○내용 · 면적 : 209,500㎡→213,552㎡(증 4,052㎡)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1건(서울농지개발조합) 4. 검토의견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은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용왕산 근린공원과</p>	의안 번호	1262	<p>폭원 25m의 대로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용왕산 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확장코자 하는 내용임.</p> <p>○용왕산 근린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양천구 목동 산 7-1 일대 4,052㎡의 토지는 지형이 경사각을 이루고 있고, 임상도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사실상 공원으로 관리되어온 실정이므로 공원녹지 공간확보 차원에서 공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은 시 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5px 0;"> <tr> <td style="width: 20%;">의안 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1263</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의안 번호	1263																			
의안 번호	1262																							
의안 번호	1263																							
<p>3. 주요요지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위 치</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3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정</td> <td>공 원</td> <td>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5,029,258</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증 415.2㎡</td> </tr> <tr> <td>변경</td> <td>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 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5,029,673.2</td> </tr> <tr> <td>기정</td> <td>유통업무설비</td> <td>서초구 양재동 214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359,007.5</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증 9,751.6㎡</td> </tr> <tr> <td>변경</td> <td>유통업무설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 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368,759.1</td> </tr> </tbody> </table>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 원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	5,029,258	증 415.2㎡	변경	공 원	상 동	5,029,673.2	기정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 일대	359,007.5	증 9,751.6㎡	변경	유통업무설비	상 동	368,759.1	<p>4. 검토의견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은 서초구 염곡동과 내곡동 일대 기정 공원(5,029,258㎡)에 415.2㎡를 추가하여 공원면적을 5,029,673.2㎡로 변경하고 한편, 서초구 양재동 214 일대 현 유통업무설비(359,007.5㎡)에 9,751.6㎡를 추가하여 같은 유통업무설비면적을 368,759.1㎡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임.</p> <p>○본 시설변경의 원인은 '83. 8. 개포지구 택지개발환지 확정시 철도청의 요구에 따라 경부선 부곡역과 중앙선 노동역을 연</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 원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	5,029,258	증 415.2㎡																				
변경	공 원	상 동	5,029,673.2																					
기정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 일대	359,007.5	증 9,751.6㎡																				
변경	유통업무설비	상 동	368,759.1																					

<p>결하는 남부순환철도 계획에 따라 철도로서 시설결정 없이 서울시 소유의 철도부지로 확보하였으나,</p> <p>○'93. 4. 철도청에서 본 철도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주변여건에 적합하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p> <p>○양재동 214 일대 철도부지는 현재 양곡도매시장과 화물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지역 내에 폭 12m의 세장 형태를 이루고 있어 주위의 유통업무설비에 포함시켜 유통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변토지이용상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시 유통업무설비 변경안에 동의 의견이며,</p> <p>○염곡동과 내곡동 일대의 공원시설변경 대상지는 당초 이 지역을 철도역사 지역으로 예정하여 구획정리지역 내에만 역사부</p>	<p>지를 확보한 결과 주변 대모산 자연공원과는 요철을 이루고 있어,</p> <p>○주변 업무지역에 맞추어 지형을 정비하고 잔여지를 자연공원에 편입시키고자 한 것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변경안으로 인정되어 시의 변경 결정안에 각각 동의 의견임.</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3. 주요요지</p> <p>○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70%; text-align: center;">1272</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의안 번호	1272																																											
의안 번호	127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 설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면 적(㎡)</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 감</th> </tr> </thead> <tbody> <tr> <td>결정</td> <td>학 교</td> <td>성동구 금호1가 산37-1</td> <td style="text-align: center;">15,430</td> <td></td> <td></td> <td></td> </tr> <tr> <td>변경</td> <td>공 원 (응봉계2근린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564,217</td> <td style="text-align: center;">548,787</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 15,430</td> <td>학교신설 공원일부 해제</td> </tr> <tr> <td>변경</td> <td>공 원 (용마자연공원)</td> <td>성동구 증곡동 176-78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5,052,603</td> <td style="text-align: center;">5,068,036</td> <td style="text-align: center;">증 15,433</td> <td>대체공원 확보</td> </tr> <tr> <td>변경</td> <td>공 원 (용곡국민학교)</td> <td>성동구 증곡동 176-1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955</td> <td style="text-align: center;">16,535</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 4,420</td> <td>대체공원 확보로 학교일부 해제</td> </tr> <tr> <td>변경</td> <td>공 원 (용곡중학교)</td> <td>성동구 증곡동 176-77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20,681</td> <td style="text-align: center;">10,276</td> <td style="text-align: center;">감 10,405</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일반주거지역 일부(608㎡) 대체공원에 포함(소유자 : 교육감)</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결정	학 교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5,430				변경	공 원 (응봉계2근린공원)	"	564,217	548,787	감 15,430	학교신설 공원일부 해제	변경	공 원 (용마자연공원)	성동구 증곡동 176-78 일대	5,052,603	5,068,036	증 15,433	대체공원 확보	변경	공 원 (용곡국민학교)	성동구 증곡동 176-1일대	20,955	16,535	감 4,420	대체공원 확보로 학교일부 해제	변경	공 원 (용곡중학교)	성동구 증곡동 176-77 일대	20,681	10,276	감 10,405	"	<p>4. 검토의견</p> <p>○본 도시계획시설(공원, 학교) 결정 및 변경결정은 성동구 응봉동 소재 응봉2근린공원(564,217㎡)중 일부(15,430㎡)를 변경하여 학교로 결정하고, 이 공원용지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p> <p>○현재의 학교용지인 성동구 증곡동 176-</p>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결정	학 교	성동구 금호1가 산37-1	15,430																																											
변경	공 원 (응봉계2근린공원)	"	564,217	548,787	감 15,430	학교신설 공원일부 해제																																								
변경	공 원 (용마자연공원)	성동구 증곡동 176-78 일대	5,052,603	5,068,036	증 15,433	대체공원 확보																																								
변경	공 원 (용곡국민학교)	성동구 증곡동 176-1일대	20,955	16,535	감 4,420	대체공원 확보로 학교일부 해제																																								
변경	공 원 (용곡중학교)	성동구 증곡동 176-77 일대	20,681	10,276	감 10,405	"																																								

<p>78 일대에 소재한 용곡국민학교와 용곡중학교 개설 잔여지 15,433㎡를 확보하여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임</p> <p>○본 공원 및 학교용지 변경의 원인은 현재 성동구 금호동 관내에는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중부교육청 관내지역까지 학생을 배정하고 있음.</p> <p>○또 무학여중은 무학여고와 같은 구내에 있어 수업시간 시차 등으로 교육상 장애가 있고, 운동장까지 동시 사용하고 있어 수업에 지장이 많아 금호동의 자기학군 내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금호동 1가 산 37-1 소재 옹봉2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여 무학여중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p> <p>○본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원의 지정과 변경은 학교 이전에 따라 이전대상지인 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이 공원에 대한 대체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다른 지역에 공원을 지정하는 등 삼각관계의 도시계획안으로서,</p> <p>○공원용지 변경은 이용주민의 많은 민원에 상응하므로 현지를 답사하여 이해 관련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처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보 류</p> <table border="1" data-bbox="284 1503 435 1574"> <tr><td>의안 번호</td><td>1224</td></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위치 : 강동구 명일동 306-9 ○면적 : 661㎡</p>	의안 번호	1224	<p>4. 전문위원 검토보고</p> <p>○본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은 강동구 명일동 306-9의 661㎡의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한 것인바,</p> <p>○이 토지는 '83. 8. 25 이 토지를 포함한 명일동 306-7 일대를 토지형질을 변경하면서 본 토지는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던 것이나 관리청에서 적시에 기부채납정리가 되지 않아 금번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코자 한 것으로 시 결정안에 동의의견임.</p> <p>○본 토지는 관리 부주의로 성업공사에서 경매되어 관할구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바, 토지대장상으로도 공공용지로 명시되어 있어 개인의 부당한 토지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공원으로 시설 결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p> <p>5. 심사결과 보류</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p> <table border="1" data-bbox="810 1211 962 1283"> <tr><td>의안 번호</td><td>1235</td></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제출년월일 : '94. 2. 1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2. 제안사유 : 지하철 5호선 구간중 본선내 환기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의안 번호	1235
의안 번호	1224				
의안 번호	1235				

3. 주요요지					
○입안 내용					
구분	세부시설	위 치		규모(㎡)	비 고
변경 결정	도시철도 (환기구)	동대문구 장안동 464-10앞		A=280→766	규모변경
○지역현황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 없음				의안 번호 1236 제출년월일 : '95. 2. 14 제출 자 : 서울특별시장	
4. 참고사항					
○지하철 5호선 결정(방화동~고덕동) : '90.10.13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95.1.14~'95.1.28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사유 : '95년말 이전계획에 있는 공군대학이적지에 대하여 당초 공공용지로 확보키로 한 취득목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추가)결정코자 함	
3. 주요요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원	보라매근린공원	동작구 신대방동일대	407,529	중 12,730㎡
변경	공원	상 동	상 동	420,259	
4. 참고사항					
○공군대학이적지 토지이용계획					
계 : 11개 시설 32,881평					
도시계획시설(7) : 도로(3,400평) 공원(기결정(23,275평) : 1,825평, 금회결정 : 3,850평) 학교(5,400평) 기상청(5,500평) 남부수도사업소(1,800평) 소방서(1,000평) 민방공통제소(500평)					
공공업무시설(4) : 적십자사서울지사(1,500평) 구민체육센터(1,500평) 새마을협의회서울지회(400평) 청소년연맹(500평)					
기 타 : 공공용지(4,630평), 기존 도로등 : 1,076평					
				○보라매근린공원결정 : '86. 6. 16. ○공람결과 : 주민의견 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238 제출년월일 : '95. 2. 14 제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지목상 공원으로 환지확정처분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공					

원)로 결정코자 함.

3. 주요요지

○입안내용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공 원 (어린이공원)	서초구 잠원동 70-6	1,100	공원신설 결정 -5개소 5,335.8㎡
"	"	서초구 잠원동 70-7	1,600	
"	"	서초구 잠원동 70-8	1,100	
"	"	서초구 잠원동 66-11	767.7	
"	"	서초구 잠원동 66-12	768.1	
기정	(서초2 어린이공원) "	서초구 반포동 30-5일 대	5,506.9	공원추가 결정 (402.9㎡)
변경		"	5,909.8	

4. 참고사항

○도시계획사항

- 잠원동 70-6 : 일반상업지역, 아파트지구
- 잠원동 70-7의 4필지 :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안 승인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260
----------	------

제출년월일 : '95. 3. 2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상정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정·보완

2. 기준 및 목표년도

기준년도 : 1991년

목표년도 : 2011년

3. 내 용

도시기본계획의 전체구상

○서울 대도시권 계획구상

○21세기 서울의 발전과 과제

○도시공간 구조개편 구상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사회개발부문, 도시경관부문, 공원녹지부  
문, 산업경제부문, 도시환경부문, 도시교  
통부문, 정보통신부문, 방재계획부문, 주  
택계획부문, 실현방안부문, 토지이용부문

4. 상정사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도  
시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시정운영  
을 하기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5. 참고사항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4항에 의거 건설  
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  
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기정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 : 1990. 5.

11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1261</td> </tr> </table>	의안 번호	1261	제출년월일 : 1995. 3. 2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면의 지적선이 임야도 및 지적도 원부와 상이하다하여 일치시키는 정정 지적고시를 하면서 공원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토지주는 토지일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는 관계로 토지전체가 건축이 곤란한 세장형이 되었다하여 ○지적승인고시 도면정정시 공원용지에 포함된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하고, 공원의외부인접 임야를 공원용지에 편입시켜 건축이 가능케 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공원경계를 조정코자 함															
의안 번호	1261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강남구 도곡동 190-3 임야 848㎡ 중 124㎡는 -'77. 7. 9 도곡근린공원 변경결정고시(건고시 138호) 및 '79. 6. 11 도곡근린공원 지적승인고시 (서고시 252호) 이후 14년 동안 공원용지가 아닌 것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93. 7. 23 강남구청에서 지적승인고시도																			
3. 주요요지 ○입안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 설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변 경 내 용(㎡)</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 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 결정</td> <td>도 곡 근린공원</td> <td>강남구 도곡동 190, 153일대</td> <td>249,980</td> <td>249,987</td> <td>증 7</td> <td>공원제외 : 124㎡ 공원편입 : 131㎡</td> </tr> </tbody> </table>			구분	시 설 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결정	도 곡 근린공원	강남구 도곡동 190, 153일대	249,980	249,987	증 7	공원제외 : 124㎡ 공원편입 : 131㎡
구분	시 설 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결정	도 곡 근린공원	강남구 도곡동 190, 153일대	249,980	249,987	증 7	공원제외 : 124㎡ 공원편입 : 131㎡													
4. 도시계획사항 ○도곡동 190-3 임야(양수홍) : 일반주거지역, 공원일부 저축 ○도곡동 153-6 임야(양수홍) :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padding: 2px;">1262</td> </tr> </table>	의안 번호	1262	제출년월일 : 1995. 3. 2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2. 제안이유 ○용왕산근린공원과 폭원 25m의 대로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형·지세 등의 조건뿐만 아니라 임상이 양호하여 하나의 공원으로 사실상 관리되어온 토지이므로 용왕산근린공원에 편입관리코자 함.															
의안 번호	1262																		
3. 주요요지 ○입안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시 설 명</th> <th rowspan="2">위 치</th> <th colspan="3">변 경 내 용(㎡)</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정</th> <th>변 경</th> <th>증 감</th> </tr> </thead> <tbody> <tr> <td>변경 결정</td> <td>용 왕 산 근린공원</td> <td>양천구 목동 산 7-1 일대</td> <td>209,500</td> <td>213,552</td> <td>증 4,052</td> <td>임상양호지 공원편입</td> </tr> </tbody> </table>			구분	시 설 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결정	용 왕 산 근린공원	양천구 목동 산 7-1 일대	209,500	213,552	증 4,052	임상양호지 공원편입
구분	시 설 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 결정	용 왕 산 근린공원	양천구 목동 산 7-1 일대	209,500	213,552	증 4,052	임상양호지 공원편입													

<p>4. 참고사항</p> <p>○도시계획사항: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p> <p>○공람공고중 의견접수: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농지개발조합: 조합소유목동산9-6 임야 2,116㎡는 '94. 10. 5 매각처분(낙찰) 된 토지이니 공원결 정 제외</li> </ul> <p>○보상비 확보: 1,975백만원(신정1근린공원 보상 잔여예산)</p>	<table border="1" data-bbox="805 403 957 481"> <tr> <td>의안 번호</td> <td>1263</td> </tr> </table> <p>제출년월일: 1995. 3. 25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p> <p>2. 제안사유: 본 철도부지는 개포 택지개발계획에 의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철도청의 남부순환철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주변여건에 적합하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함.</p>	의안 번호	1263																					
의안 번호	1263																							
<p>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p>																								
<p>3. 주요요지</p> <p>○도시계획시설(공원,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 설 명</th> <th>위 치</th> <th>면적(㎡)</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기정</td> <td>공 원</td> <td>서초구 염곡동 내곡동일대</td> <td>5,029,258</td> <td rowspan="2">증 415.2㎡</td> </tr> <tr> <td>변경</td> <td>공 원</td> <td>상 동</td> <td>5,029,673.2</td> </tr> <tr> <td>기정</td> <td>유통업무설비</td> <td>서초구 양재동 214일대</td> <td>359,007.5</td> <td rowspan="2">증 9,751.6㎡</td> </tr> <tr> <td>변경</td> <td>유통업무설비</td> <td>상 동</td> <td>368,759.1</td> </tr> </tbody> </table>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 원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일대	5,029,258	증 415.2㎡	변경	공 원	상 동	5,029,673.2	기정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일대	359,007.5	증 9,751.6㎡	변경	유통업무설비	상 동	368,759.1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공 원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일대	5,029,258	증 415.2㎡																				
변경	공 원	상 동	5,029,673.2																					
기정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일대	359,007.5	증 9,751.6㎡																				
변경	유통업무설비	상 동	368,759.1																					
<p>4. 참고사항</p> <p>○철도부지 토지이용 계획(당초 철도부지 면적: 5,319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업무설비(2,950평), 연구시설(596평), 도로(311평), 전기공급설비(1,200평), 공원(262평)</li> </ul> <p>○공람공고시 주민의견: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출 자: 서울시 운송안전조합 동부지부의 1</li> <li>제출의견: 양재동 222-3 부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화물터미널 부지와 교환(진입도로로 활용) 요망.</li> <li>반영여부: 미반영</li> </ul>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案番號 1272番의 表決에 앞서 議決定足數를 確認하겠습니다.</p>	<p>會議場 밖에 계신 議員님께서는 속히 입장하여 주시고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는 在席議員數를 確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p> <hr/> <p>21. 都市計劃施設(公園,學校)決定및變更決定에 關한議會意見聽取의件審議保留動議</p> <p>22. 都市計劃施設(公園,學校)決定및變更決定에 關한議會意見聽取의件再回附 (17時 26分)</p> <p>○議長 白昌鉉 本 案件을 深度 있게 處理하기 위하여 保留하고자 하는데 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그러면 本 案件은 방금 表決結果 保留動議가 可決되었으므로 本 案件을 해당 常任委員</p>																							